

의안번호	제 호
의 결 연 월 일	2023. . . (제 회)

의결사항	
------	--

고성군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

제 출 자	고 성 군 수
제출연월일	2023. 10. 6.

고성군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

의안 번호	제 호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: 2023. 10. 6.

제 출 자: 고성군수

1. 제안이유

전문적인 시설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위탁 운영되고 있는 「고성군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」에 대하여(2022. 9. 26. 의안번호 제2503호) 「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」 제6조 제4항에 의거 민간위탁 동의 시 예산액 대비 2024년 예산 편성 요구액이 20% 이상 증액되어 의회 변경 동의를 구하고자 함

2. 위탁 근거

- 가. 「아동복지법」 제44조의 2(다함께돌봄센터) 제2항
- 나.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1조의 2(시설의 위탁)
- 다.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

3. 위탁 내용

가. 시설현황

시설명	위치	면적	종사자	정원	시설현황	비고
고성군 다함께 돌봄센터 1호점	고성읍 동외로 15 6번길 36, 3층	97m ²	2명	20명	놀이·학습공간, 사무공간, 상담실 등	

나. 위탁기간: 2023. 1. ~ 2027. 12. (5년)

다. 위탁방법 및 추진사항

- 1)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·선정(공개모집): 2022. 12. 19.
- 2) 위탁자: 사단법인 백향가정상담센터(대표자 박덕해)
- 3) 위탁계약 체결: 2022. 12. 22.
- 4) 위탁운영: 2023. 1. 1. ~ 현재(센터장 백정여)

라. 위탁내용: 고성군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관리·운영 전반

마. 예산 변경내역

(단위: 천원)

구분	당초 (2022년)	변경 (2024년)	증감액	비고
합계	86,092	104,472	18,380	21% 증가
인건비	59,692	73,272	13,580	국비50% 도비25% 군비25%
운영비	3,600	12,000	8,400	국비50% 도비25% 군비25%
자재운영비	22,800	19,200	△3,600	군비100%

1) 민간위탁 동의 시 예산액 대비 2024년 예산 편성 요구액 20%이상 증액

2) 증액 사유: 2024년 다함께돌봄사업 가내시 통보 기준(국 50, 도 25, 군25)

가) 인건비: 증 13,580천 원

- 당초(2022년): 4,974천 원 × 12월 = 59,692천 원(센터장외 1명)

- 변경(2024년): 6,106천 원 × 12월 = 73,272천 원(센터장외 1명)

나) 운영비: 증 8,400천 원

- 당초(2022년): 월 300천 원 × 12월 = 3,600천 원

- 변경(2024년): 월 1,000천 원 × 12월 = 12,000천 원

붙임 1. 2023년 다함께돌봄 사업 안내

2. 2024년 다함께돌봄사업(다함께돌봄센터) 자치단체 보조 가내시 통보

3. 관련법령

다. 인건비

- 센터장 1인, 돌봄선생님 1~2인(시간제(4시간) 돌봄선생님 2~4인)의 인건비(지방비 포함)
 - * 월급여, 4대보험 사업자부담금, 퇴직적립금 포함

※ 정원별 돌봄선생님 차등지원 기준

정원	돌봄선생님(4시간 시간제 기준)
30명 이하	1인(2인)
31명 이상 40명 이하	1.5인(3인)
41명 이상	2인(4인)

인건비 보조금 구성 내역

- 센터장(8시간) 1인: 3,089,000원
 - 2,584,000원(월 지급액)이상 + 4대보험료 사업자부담금 + 퇴직적립금
- 돌봄선생님(8시간) 1인: 2,867,000원
 - 2,399,000원(월 지급액)이상 + 4대보험료 사업자부담금 + 퇴직적립금
- 시간제 돌봄선생님(4시간) 1인: 1,434,000원
 - 1,199,000원(월 지급액)이상 + 4대보험료 사업자부담금 + 퇴직적립금
 - ※ 4대보험: 국민연금, 국민건강보험(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), 고용보험, 산재보험
 - ※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적립금은 19.507%로 계산하였으며, 산재보험요율이 업종별로, 임금채권분담율 포함 여부, 석면피해분담 포함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실제 4대보험료 사업자 부담금은 다함께돌봄센터별로 달라질 수 있음
 - ※ 법인대표 겸 센터장은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님
 - ※ 중도 입·퇴사자의 경우는 임면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
 - 두루누리 사회보험지원사업과 같이 별도 보험료 지원을 받는 다함께돌봄센터의 경우 4대보험료 사업자부담금에서 발생한 철감분을 해당 종사자 본인의 처우개선 등 인건비로 활용 가능
 - 인건비의 특성상, 수당형식으로 지급하는 것은 자제하고, 매월 발생하는 철감분 등을 급여액에 추가하여 지급하되, 월 급여액이 변동됨에 따라 내달 사회보험료 및 퇴직적립금이 일부 변동될 수 있음을 충분히 안내하고 센터에서 관리하도록 할 것
 - 이에 따라 연말에 인건비 중 일부를 지자체에서 정산(반납요청)할 수 있으나, 반납금액을 최소화 하여 종사자에게 인건비를 전액 지급하도록 노력할 것
 - 다만, 4대보험료 사업자부담금 이외 퇴직적립금으로 인해 발생한 인건비 잔액*은 종사자 처우개선 등으로 활용 불가
 - * 퇴직금 미지급 대상자의 퇴직적립금, 중도 퇴사자의 퇴직적립금 반납금
 - 종사자 미채용으로 인한 인건비 불용액은 반드시 반납 처리할 것(타 종사자의 인건비 또는 운영비로 사용 불가, 센터장 공백에 따른 인건비 불용액 또한 타 종사자의 인건비 또는 운영비로 사용 불가)

라. 운영비

- 업무추진비, 여비, 수송비 및 수수료, 공공요금, 제세공과금, 연료비, 기타운영비 및 사업비 등
- 개소당 지원 단가 : 월 100만원(지방비 포함)
 - ※ 운영시간 연장 시범사업 선정센터의 경우, 월 50만원 추가 지원
 - ※ 지자체별로 추가 운영비 지원 가능

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



경 상 남 도

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2024년 다함께돌봄사업(다함께돌봄센터) 자치단체보조 가내시 통보

1. 다함께돌봄사업 추진에 힘써주시는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.
2.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2조(보조금 예산의 통지)에 따라 2024년 다함께돌봄사업(다함께돌봄센터) 자치단체 국고보조금 예산을 붙임과 같이 가내시하시니, 2024년 예산안 편성 및 지방비 확보 등을 통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* 운영시간 연장 사업은 임의배정값으로, 수요조사를 통해 확정내시에 반영 예정

붙임 2024년 다함께돌봄사업(다함께돌봄센터) 국고보조금 가내시 1부. 끝.

경 상 남 도 지 사

신자 창원시장(아동청소년과장), 진주시장(아동보육과장), 통영시장(여성가족과장), 사천시장(여성가족과장), 김해시장(아동청소년과장), 밀양시장(사회복지과장), 거제시장(아동청소년과장), 양산시장(아동보육과장), 의령군수(주민생활지원과장), 함안군수(주민복지과장), 창녕군수(노인여성아동과장), 고성군수(교육청소년과장), 남해군수(주민행복과장), 하동군수(가족정책과장), 산청군수(복지지원과장), 함양군수(사회복지과장), 거창군수(행복나눔과장), 합천군수(노인아동여성과장)

무관 아동청소년과 전결 2023. 9. 22.
장

조자 사무관

행 아동청소년과-16775 (2023. 9. 22.) 접수 교육청소년과-26860 (2023. 9. 22.)

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, 경상남도청 3층 아동 / <https://gyeongnam.go.kr>
청소년과 (사립동)

화번호 055-211-4284 팩스번호 055-211-4279 / ljh0407@korea.kr / 비공개(5)

가야문화의 독보적 증거, 경남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(2023. 9. 25.)

□ 아동복지법

제44조의2(다함께돌봄센터) ①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(이하 “방과 후 돌봄서비스”라 한다)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1. 아동의 안전한 보호
2.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
3. 등·하교 전후,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
4. 체험활동 등 교육·문화·예술·체육 프로그램의 연계·제공
5. 돌봄 상담,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
6.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

②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·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③ 국가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.

④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은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에게 제1항 각 호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.

⑤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,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9. 1. 15.]

□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

제21조의2(시설의 위탁)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

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. <개정 2004. 9. 6., 2012. 8. 3., 2019. 6. 12.>

1. 수탁자의 명칭,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
2. 위탁계약기간
3.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
4.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
5.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
5의2.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

6.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
7.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. 다만,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. <개정 2004. 9. 6., 2012. 8. 3., 2016. 8. 3.>

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 <신설 2016. 8. 3.>

1.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
2.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
[제23조에서 이동 <2012. 8. 3.>]

□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

제6조(군의회 동의 및 보고)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위탁 시작 60일 전까지 민간위탁 여부에 관하여 고성군의회(이하 “군의회”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군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.

1.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
2. 청소, 방호, 청사관리, 검침, 주차시설, 차량 운행 등 연간 반복적 단

순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1.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경우
2.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기존의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(이하 “재계약”이라 한다)하는 경우

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안을 군의회에 제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민간위탁 사무명
2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3. 민간위탁 사무 내용
4. 민간위탁 시설 개요(소재지, 규모, 지원시설, 위치도)
5. 민간위탁 기간
6. 수탁기관 선정방식
7. 위탁연도별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<개정 2022.12.27. 조2767>
8.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
9. 그 밖에 민간위탁 동의에 필요한 사항

④ 군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중요내용(다른 위탁사무의 추가 또는 위탁사무 내용의 전면 변경, 기존 위탁사무의 분리, 예산의 20퍼센트 이상 변경, 위탁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과 그 밖에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등을 말한다)이 변경될 경우에는 새로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의 사항이 변경될 경우 군의회에 보고하거나 예산의 의결을 받으면 군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. <신설 2022.12.27. 조2767>